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11월 29일 임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2013년 4월 갈등관리업무가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무부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간 사 : 감사관 → 자치행정과장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무부서가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뀔에 따라 조례 내용 중 간사를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